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 고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인 정보로 은행이 발급한 인증서를 의미합니다.</p> <p>3. “가입자”라 함은 <u>“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”</u>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은행으로부터 인증서 이용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.</p> <p>4. “이용자(이용기관)”라 함은 가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<u>“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”</u>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</p> <p>5. “전자문서”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6. “전자서명”이라 함은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가. 서명자의 신원 나. 서명자가 해당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</p> <p>7. “전자서명인증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</p> <p>8. “전자서명생성정보”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</p> | <p>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인 정보로 은행이 발급한 인증서를 의미합니다.</p> <p>3. “가입자”라 함은 <u>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</u>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은행으로부터 인증서 이용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.</p> <p>4. “이용자(이용기관)”라 함은 가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<u>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</u>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</p> <p>5. “전자문서”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6. “전자서명”이라 함은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가. 서명자의 신원 나. 서명자가 해당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</p> <p>7. “전자서명인증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</p> <p>8. “전자서명생성정보”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</p> | <p>인증서 명칭변경</p> <p>인증서 명칭변경</p> |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 고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.</p> <p>제 7 조 (이용방법) <생략></p> <p>제 8 조 (이용시간)</p> <p>① “하나 OneSign 인증서 서비스”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</p> <p>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. 단,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사전통지가 곤란한 경우 통지 장애 사유 해소 즉시 통지합니다.</p> <p>제 9 조 (수수료)</p> <p>① “하나 OneSign 인증서 서비스”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입자가 사용하는 인증서는 무료입니다.</p> <p>②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1 개월 전에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수료 변경사항을 통지하고, 은행 앱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</p> <p>제 3 장 본인확인서비스</p> | <p>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.</p> <p>제 7 조 (이용방법) <좌동></p> <p>제 8 조 (이용시간)</p> <p>① 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</p> <p>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. 단,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사전통지가 곤란한 경우 통지 장애 사유 해소 즉시 통지합니다.</p> <p>제 9 조 (수수료)</p> <p>① 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입자가 사용하는 인증서는 무료입니다.</p> <p>②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1 개월 전에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수료 변경사항을 통지하고, 은행 앱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</p> <p>제 3 장 본인확인서비스</p> | <p>인증서 명칭변경</p> <p>인증서 명칭변경</p> |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 고 |
|--|---|--|
| <p>제 10 조(본인확인서비스) ~ 제 11 조(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)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장 이용 제한 및 해지</p> <p>제 12 조 (서비스 이용제한 및 인증서 폐기)</p> <p>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<u>“하나 OneSign 인증서 서비스”</u>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고장·보수·업그레이드·점검·교체·통신장애·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. 제반 설비의 장애,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. 정전,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<p>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폐기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| <p>제 10 조(본인확인서비스) ~ 제 11 조(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)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장 이용 제한 및 해지</p> <p>제 12 조 (서비스 이용제한 및 인증서 폐기)</p> <p>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<u>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</u>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고장·보수·업그레이드·점검·교체·통신장애·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. 제반 설비의 장애,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. 정전,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<p>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폐기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blue;">인증서 명칭변경</p> |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 고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p>2. 가입자가 1년 동안 "하나 OneSign 인증서 서비스"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</p> <p>3. 인증서 간편비밀번호를 5회 연속 잘못 입력하는 경우</p> <p>4.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</p> <p>5. 가입자의 신원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</p> <p>6.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</p> <p>7.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, 대체수단이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</p> <p>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</p> <p>2.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, 대체수단이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</p> <p>3. 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</p> | <p>2. 가입자가 1년 동안 "하나인증서"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</p> <p>3. 인증서 간편비밀번호를 5회 연속 잘못 입력하는 경우</p> <p>4.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</p> <p>5. 가입자의 신원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</p> <p>6.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</p> <p>7.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, 대체수단이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</p> <p>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의심되는 경우</p> <p>2.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, 대체수단이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</p> <p>3. 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</p> | <p>인증서 명칭변경</p> |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 고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4. 가입자의 개인정보(휴대폰정보, 성명, 생년월일)가 변경된 경우</p> <p>④ 은행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해당되어 "하나 OneSign 인증서 서비스" 이용이 제한되거나 인증서가 폐기되는 경우,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하며, 불가피하게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후 통지합니다.</p> <p>제 13 조(서비스해지) ~ 제 15 조(가입자의무) <생략></p> <p>제 16 조 (개인정보보호)</p> <p>① 은행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"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"의 이용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보 주체인 가입자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.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(신용)정보를 이용·제공할 수 있는 경우 <p>② 은행은 개인(신용)정보 유출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. 다만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</p> | <p>4. 가입자의 개인정보(휴대폰정보, 성명, 생년월일)가 변경된 경우</p> <p>④ 은행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해당되어 "하나인증서 서비스" 이용이 제한되거나 인증서가 폐기되는 경우,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하며, 불가피하게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후 통지합니다.</p> <p>제 13 조(서비스해지) ~ 제 15 조(가입자의무) <좌동></p> <p>제 16 조 (개인정보보호)</p> <p>① 은행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"하나인증서 서비스"의 이용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보 주체인 가입자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.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(신용)정보를 이용·제공할 수 있는 경우 <p>② 은행은 개인(신용)정보 유출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. 다만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</p> | <p>인증서 명칭변경</p> <p>인증서 명칭변경</p> |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 고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 17 조(사고·장애시의 처리) ~ 제 18 조(손해배상 및 면책)<생략></p> <p>제 19 조 (정보의 제공)</p> <p>① 은행은 “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”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자에게 전자적장치(PUSH, SMS, MMS, 전자우편 등)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은행은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가입자가 사용한 대체수단과 입력된 본인확인정보, 이용자(이용기관)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, 가입자의 신원, 권한,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20 조(준거법 및 관할법원) ~ 제 21 조(약관 외의 준용)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칙></p> <p>이 약관은 2022 년 4 월 20 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 년 3 월 28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| <p>제 17 조(사고·장애시의 처리) ~ 제 18 조(손해배상 및 면책)<좌동></p> <p>제 19 조 (정보의 제공)</p> <p>① 은행은 “하나인증서 서비스”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자에게 전자적장치(PUSH, SMS, MMS, 전자우편 등)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은행은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가입자가 사용한 대체수단과 입력된 본인확인정보, 이용자(이용기관)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, 가입자의 신원, 권한,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20 조(준거법 및 관할법원) ~ 제 21 조(약관 외의 준용)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칙></p> <p>이 약관은 2022 년 4 월 20 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 년 3 월 28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 년 5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| <p>인증서 명칭변경</p> |